

보도시점 (전매체) 8. 7.(목) 14:00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한성숙 장관, 폭염 대비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등 전통시장 재난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7일(목) 서울 마포 드림스
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소개 >

- 목적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
- 주제 :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 개최 예정
- 특징 : 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 발표

릴레이 간담회 취지에 따라 한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하였다.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하여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 ②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
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 ③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
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2차 개요 >

■ **일시/장소** : '25.8.7.(목), 14:00 /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 7층 대교육장

■ **참석자**

- **(협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외 각 지회장 11명
- **(소상공인)** 정책금융 활용 경험 소상공인 1명
- **(전문가)** 경영개선 컨설턴트, 금융전문가 등 3명
- **(정부)**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정책국장,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계장
- **(지자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인천시 계양구, 광주시 북구, 전북 소방본부 담당자 4명
-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외 1명

이 날 두 번째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논의 내용을 기반 삼아 소상공인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으로써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아래와 같다.

❶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❷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③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천만원, 동산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천만원, 동산 5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0,000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계획
 참고 2.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참고 3.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국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장	서정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권용준 (044-204-7899)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21)
		담당자	사무관	류민희 (044-204-7861)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송양훈 (044-204-7845)



참고 1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계획

□ (일시·장소) '25.8.7.(목), 14:00 / 서울지역본부 7층 대교육장

*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참석자) 26명

- 중기부(3) : 장관, 소상공인국장, 경영안정지원단장
- 타부처(1)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계장
- 지자체(4)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경
인천시계양구 지역경제과장
광주시북구 소상공인지원과 팀장
전북소방본부 예방총괄팀장
- 협회장(13) :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각 지회장 11명, 감사 1명
- 공공기관(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차장
- 소상공인(1) : 재난피해 1명(긴급경영안정자금)
- 전문가(2) : 한국화재보험협회 팀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책임

□ (슬로건) 현장 목소리로 뿌린 9개의 씨앗, 정책으로 피어납니다.

두 번째 씨앗 : 재난신속대응 체계 구축

□ 세부일정

※ 사회자 :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국장

시 간	주요 일정	비 고
14:00~14:07 (7')	· 개회 및 인사말씀	장관
14:07~14:12 (5')	· 1차 간담회 개선사항 발표	경영단장
14:12~14:20 (8')	· 발제 :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장
14:20~14:25 (5')	· 기념사진 촬영	
14:25~15:50 (85')	· 참석자 정책제언 및 답변	
15:50~15:55 (5')	· 마무리 말씀	장관
15:55~16:00 (5')	· 폐회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개선과제	2
1. (예방) 전통시장 폭염 피해 예방 위한 냉방설비 지원	2
2. (대응) 재난 피해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3
3. (회복)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개선	3

2025. 8. 7.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 상 공 인 정 책 국

I. 추진배경

□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그간 중기부 노력

※ (방향) 재난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의 재해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방-대응-회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

가. 예방

- (안전점검) 화재 예방 위해 전통시장의 전기·소방·가스 분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풍수해 취약 전통시장(저지대, 반복 침수 등) 집중 점검
 - * 점검기관 : 화재 한국화재보험협회(위탁) / 풍수해 지방중기청·지자체·소진공·외부 전문가
-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개별점포 대상 전기·소방·가스 등의 시설 개선 지원
 - * 전기 차단기, 분전반, 옥내배선 등 소방 화재알림시설, 소방 안전 품목
 - 가스 가스 보관함, 누출 경보기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품목

나. 대응

-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재난 현장에 긴급 TF팀을 구성하여 신속 지원
 - * 구성 : 지방중기청,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신용보증재단(지점)
 - ** 지원내용 : 재해확인서 현장 발급 지원, 정책 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청 지원

다. 회복

- (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 전용 화재 피해 보장 상품 운영
- (시설 긴급복구 지원) 재난으로 복구 필요한 전기가스시설 신속 교체 지원

□ 전통시장 안전관리 개선방향

※ (재난 관리 대통령 말씀) 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② 사고 발생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③ 신속한 복구가 중요 (25.6.12. 장마철 수해 대비 현장점검 회의, 한강홍수통제소)

- 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선제적 대응
- ② 모든 피해 시장에 대한 적시 밀착 지원 체계 구축
- ③ 화재 피해상인의 실질적 회복 지원을 통해 신속한 일상복귀 토대 마련

II. 개선과제

1 [예방] 전통시장 폭염 피해 예방 위한 냉방설비 지원

□ 배경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당초 사회재난인 화재 예방 중심 운영, 최근 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 증가에 따라 지원 항목 확대 필요

현장의 목소리

-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그나마 있던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전북도민일보, '25.7.3.)

□ 추진내용

- (지원내용)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별점포·공용구간에 필요한 이동식 냉풍기 및 쿨링포그
- (지원한도)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
* 공용구간 냉방설비의 경우 시장당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편성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총 사업비(최대)	500백만원	1,000백만원	1,500백만원
국비(70%)	350백만원	700백만원	1,050백만원
지방비·자부담(30%)	150백만원	300백만원	450백만원

- (지원절차) 사업 공고(중기부) → 신청(시장→지자체→중기부) → 평가(중기부, 지자체) → 지원대상 확정 → 사업 시행(지자체)
- (향후계획) '26년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25.8.25.~9.19. 예정)

□ 기대효과

-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할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의 유입 증가

2

(대응) 재난 피해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배경

- 현 원스톱 지원센터는 피해 점포수가 많은 시장* 중심으로 재해확인서 발급, 금융상담 위주 운영, 사각지대 없도록 운영 시장 및 기능 확대 필요

* '25.7월 집중호우의 경우 당진전통시장, 합천삼가전통시장에 설치·운영

□ 추진내용

- (대상 확대) 모든 피해 시장에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 (기능 확대) 전방위적 상담 및 연계 지원 기능 확대
 - 기존 금융상담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폐업 고려 상인을 위한 재창업 연계 지원 등

□ 기대효과

-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 전통시장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해소

3

(회복) 전통시장 화재공제 정부지원 근거 마련 및 상품 개선

□ 배경

- '17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도입 이후 가입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40% 미만,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개선 필요

현장의 목소리

- "화재공제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보장 한도가 적은 편이다"(한국경제신문, '24.7.3.)

□ 추진내용

- (공제료 지원근거 마련) 전통시장법 개정 통해 정부·지자체는 공제료의 일부 지원 가능
 - * (기존) 정부는 공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24년 9.9억원) → (추가) 정부·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제료의 일부 지원 가능 ('25년 공제료 지원 예산 없음)
- (보장한도 상향) 주계약 보장한도 기존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 기존 건물+시설·집기 / 동산 각 3천만원 → 개선 건물+시설·집기 / 동산 각 5천만원
- (특약 추가) 화재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 신설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개요 >

구분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8천만원 (건물/동산 각 4천만원)	신규 1억원 (건물/동산 각 5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132,000원	198,000원	264,000원	330,000원
	B급	203,000원	304,500원	406,000원	507,500원
특약	화재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원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 벌금형 확정 판결 시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점포휴업 일당	- 추가공제료 : 연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1일 당 5만원) -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신규 화재·5대 골절 수술 위로금	- 추가공제료 : 연 300원 - 1사고당 500,000원			

* 건물구조급수(A/B급):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기대효과

- 화재로 인한 실질적 피해 규모에 보다 근접한 보상이 가능해져, 피해 상인의 영업 재개 및 생계 안정에 도움

참고 3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전통시장의 화재, 풍수해, 폭염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 (지원규모) 80개 내외 시장
- (사업기간) '25. 1월 ~ '25. 12월
- (지원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 및 개별점포
 - (시장단위)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지하도·골목형 포함), 상권활성화구역 중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20%로 완화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지하도·골목형 포함), 상권활성화구역 내 개별점포로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전기분야만 신청가능)
 - 전기안전등급이 D,E이면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
-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및 자부담 30%
- (지원내용)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사업부문	사업 내용
전기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및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소방	▶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설치 ▶ 개별점포의 소방 안전 품목
가스	▶ 개별점포별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가스 보관함,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기타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풍수해, 폭염·폭설·폭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